힐스테이트 구리역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안내**

- 힐스테이트 구리역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견본주택(http://www.hillstate.co.kr/s/#guri)으로 운영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힐스테이트 구리역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o.kr/s/#guri)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 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기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예약은 가능하며, 힐스테이트 구리역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o.kr/s/#guri)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예약시 예약가능 대상자 여부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에게 송부한 당첨자 성명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미성년자 동반불가하고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외 동반자 1인 입장가능)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백신 미접종자 및 방역패스기간 만료된 자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힐스테이트 구리역 분양상담 전화(☎031-554-4412),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1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구리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가능)**

※ 청약 1순위 자격(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 : ①세대주일 것 ②과거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단,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④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구리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2순위 청약가능)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포함)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세대원 각각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규칙 제2조 제 7호의 각목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지역(직장포함) 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재건축) 및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인가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본 아파트의 당첨 또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원 분양신청 불가/현금청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2호,4호,6호,7호 가목,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 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단,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6조에 다른 재당첨제한 경과조치 대상은 제외.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7.**)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구리시 2년 이상 계속 거주(**2020.02.17.**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경기도 구리시(주민등록등본 기준)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연속 90일초과 또는 연간 183일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o.kr/s/#guri)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하며, 거래금액과 무관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와 그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및 대출규제 안내**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제1항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 금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금지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이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10년의 범위 내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 제65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주택법」 제101조(벌칙)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2020.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기관추천,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해당) 경기도 구리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	1순위(기타) 경기도 구리시 2년미만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거주자	2순위 수도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일정	**2022.02.28.(월)**	**2022.03.02.(수)**	**2022.03.03.(목)**	**2022.03.04.(금)**	**2022.03.11.(금)**	**2022.03.16(수) ~ 2022.03.19.(토) (4일간)**	**2022.03.22.(화) ~2022.03.25.(금) (4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10:00 ~ 17:00)	당사 견본주택 (10:00 ~ 17:00)
장소	■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방문검수 - 구비서류 등을 지참 (당첨자만 해당) ■ 구비서류는 힐스테이트 구리역 홈페이지 참고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청 **균형개발과-1955호(2022.02.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7개동, 총 565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250세대[특별공급 118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공급 275세대, 보류지 5세대, 임대 35세대 제외)

■ 입주예정일 : 2024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영주택	**2022000074**	01	059.7000A	59A	59.7000	20.9900	80.6900	37.4000	118.0900	32.4100	74	7	7	14	7	2	37	37	10
		02	059.8100B	59B	59.8100	21.2200	81.0300	37.4700	118.5000	32.5500	18	1	1	3	1	0	6	12	0
		03	059.8200C	59C	59.8200	21.2200	81.0400	37.4700	118.5100	32.5500	7	0	0	1	0	0	1	6	1
		04	074.6800A	74A	74.6800	23.8800	98.5600	46.7800	145.3400	39.5900	110	11	11	22	11	3	58	52	8
		05	074.6700B	74B	74.6700	24.0000	98.6700	46.7800	145.4500	39.6300	17	1	1	3	1	0	6	11	1
		06	084.8400A	84A	84.8400	23.5800	108.4200	53.1500	161.5700	43.5500	24	2	2	4	2	0	10	14	8
합 계											250	22	22	47	22	5	118	132	28

■ 조합원 공급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6호 적용

[단위 : ㎡ ,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공급면적(㎡)			조합원	보류지	임대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059.7000A	59A	59.7000	20.9900	80.6900	103	2	-	105
059.8100B	59B	59.8100	21.2200	81.0300	-	-	35	35
059.8200C	59C	59.8200	21.2200	81.0400	11	-	-	11
074.6800A	74A	74.6800	23.8800	98.5600	38	2	-	40
074.6700B	74B	74.6700	24.0000	98.6700	2	-	-	2
084.8400A	84A	84.8400	23.5800	108.4200	121	1	-	122
합 계					275	5	35	31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타입) 약식표기	라인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1차(10%)	2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2-07-20**	**2022-11-21**	**2023-03-20**	**2023-06-20**	**2023-09-20**	**2023-12-20**	입주지정일
59A	101동 2,3,4호 103동 1,2호 104동 3,4호 106동 3,4,5호	2층	10	277,440,000	300,560,000	578,0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115,600,000
		3-4층	20	283,200,000	306,800,000	590,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18,000,000
		5-10층	21	286,080,000	309,920,000	596,0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119,200,000
		11-15층	11	288,480,000	312,520,000	601,0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120,200,000
		16-20층	12	291,360,000	315,640,000	607,0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21,400,000
59B	105동 1호	3-4층	1	284,160,000	307,840,000	592,0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18,400,000
		5-10층	4	287,040,000	310,960,000	598,0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119,600,000
		11-15층	2	289,920,000	314,080,000	604,0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20,800,000
		16-20층	2	292,800,000	317,200,000	610,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22,000,000
	106동 1호	3-4층	1	281,280,000	304,720,000	586,0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117,200,000
		5-10층	3	284,160,000	307,840,000	592,0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18,400,000
		11-15층	1	287,040,000	310,960,000	598,0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119,600,000
	107동 5호	5-10층	1	284,160,000	307,840,000	592,0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18,400,000
		11-15층	2	287,040,000	310,960,000	598,0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119,600,000
		16-20층	1	289,920,000	314,080,000	604,0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20,800,000
59C	104동 1호	2층	1	275,520,000	298,480,000	574,0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114,800,000
		3-4층	2	281,280,000	304,720,000	586,0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117,200,000
		5-10층	2	284,160,000	307,840,000	592,0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18,400,000
		11-15층	1	287,040,000	310,960,000	598,0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119,600,000
		16-20층	1	289,920,000	314,080,000	604,0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20,800,000
74A	103동 3,4호 104동 2호 105동 2,3호 106동 2호 107동 3,4호	2층	8	335,040,000	362,960,000	698,0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139,600,000
		3-4층	16	342,240,000	370,760,000	713,0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142,600,000
		5-10층	31	345,600,000	374,400,000	720,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144,000,000
		11-15층	30	348,960,000	378,040,000	727,0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145,400,000
		16-20층	25	352,800,000	382,200,000	735,0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147,000,000
74B	101동 1호	2층	1	335,520,000	363,480,000	699,0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139,800,000
		3-4층	2	342,720,000	371,280,000	714,0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142,800,000
		5-10층	5	346,080,000	374,920,000	721,0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144,200,000
		11-15층	5	349,440,000	378,560,000	728,0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145,600,000
		16-20층	4	353,280,000	382,720,000	736,0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147,200,000
84A	102동 1,2,3,4호 107동 1,2호	2층	6	376,320,000	407,680,000	784,0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156,800,000
		3-4층	12	384,000,000	416,000,000	80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160,000,000
	105동 4,5호	2층	2	372,480,000	403,520,000	776,0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155,200,000
		3-4층	4	380,160,000	411,840,000	792,0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158,40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7000A	059.8100B	059.8200C	074.6800A	074.6700B	084.8400A
약식표기 주택형	59A	59B	59C	74A	74B	84A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공급가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면적합산시 소수점 3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2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 등으로 없는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 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가 분양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하는 경우(계약금 완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라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예정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59A	59B	59C	74A	74B	84A	합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1	0	0	2	0	0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0	0	1	0	0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0	0	2	0	1	4
	중소기업 근로자		1	0	0	2	1	0	4
	장애인	경기도	1	1	0	2	0	1	5
		서울특별시	1	0	0	1	0	0	2
		인천광역시	1	0	0	1	0	0	2
	소계		**7**	**1**	**0**	**11**	**1**	**2**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 (50%)		4	1	0	6	1	1	13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 (50%)		3	0	0	5	0	1	9
신혼부부 특별공급			14	3	1	22	3	4	47
생애최초 특별공급			7	1	0	11	1	2	2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0	0	3	0	0	5
합 계			**37**	**6**	**1**	**58**	**6**	**10**	**11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이상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며, 신청자 수 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재53조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다른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아래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 군인포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 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북부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도 구리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에서 낙첨된 경기도 구리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연속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 되는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 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범위) : 47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 [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구리시 2년 이상 계속 거주)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구리시 2년 이상 계속 거주)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구리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전년도(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우선공급 - 기준소득 [5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상위소득, 2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 상위소득 [2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 [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 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범위) : 2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주**
 - **제28조제1항 따른 제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예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 + 어머니(직계존속) 등재 : 평형상관없음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단독세대)만 등재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함. 단, 5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소득 ▶ 거주지역]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구리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 공급하며, 잔여물량 발생 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게 공급하고,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1인 가구	160%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구원수 적용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 ※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 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 택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구리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 발생 시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경쟁시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구리시) 2년 이상 **(2020.02.17.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경기도 구리시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다목에 의거 아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접수 방식 :** -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자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 됩니다.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단,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로 청약불가)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 ■ **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1순위, 2순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내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세대분리된 부부가 세대주로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재당첨제한)당첨자로 처리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세대분리된 부부가 세대주로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은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1. 해당 주택건설지역 : 경기도 구리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 경기도 구리시 2년미만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1순위	**전용 85㎡이하 가점제 100%**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공급주택형은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추첨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세대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이하 "소형・저가주택등"이라 한함)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말함. 이하 같음)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청약자 본인은 제외하여 산정)** • 적용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가) 청약자의 배우자 나)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 다)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 포함)를 아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 1)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2) **무주택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주민등록 상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로서 최근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나) **단, 직계존속이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분양권등': 2018.12.11. 이후 공급계약(단,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주택에 한함) 또는 매매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다)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라)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 마)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3) **직계비속(미혼자녀로 한정)**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나)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한다. 다)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라)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제외한다. 마)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하다.** ※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9">①무주택 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d rowspan="9">■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 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d rowspan="4">■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9">③입주자 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d rowspan="9">■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7">※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able>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합니다)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구 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당첨자 계약 ②	잔여세대		잔여세대 추가계약 ①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가)	미계약(나)		
A유형(타입)	100	200(경쟁)	100	X	X	-	② 주택소유
B유형(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 주택소유 / (나) 주택소유
C유형(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	② 주택소유 / (가), (나) 주택소유 아님
D유형(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	② 주택소유 / (가) 주택소유 아님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② 정당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소유로 봄.

*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당첨자가 계약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소유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소유로 간주함.

-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판정기준 및 '소형·저가주택 등' 특례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기준

경합	주택수	적용기준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제53조 5호(20㎡이하) ⊕ **소형·저가**	2	5호 미적용 및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제53조 각호 ⊕ **제5호**(20㎡이하)	1	5호 미적용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0	**모두 적용**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Ⅳ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2.2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2.03.02.(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2022.03.03.(목) 09:00~17:30		
	2순위	2022.03.04.(금)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 ~ 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무주택/계약자)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특별공급신청서는 견본주택 청약시 필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단신부임 입증서류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경우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다자녀 특별공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O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2020.1.1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O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사실 증명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O		소득세 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서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2020.1.1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O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사실 증명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배우자의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O		인감증명서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O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②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①번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1.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견본주택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
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
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경기도 구리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경기도 구리시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o.kr/s/#guri)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당첨자 발표 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시: **2022.03.11.(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2.03.22.(화)~2022.03.25.(금) 4일간 (10:00~17:00)** • 장소 -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3.11.(금) ~ 2022.03.20.(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3.1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일정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2022.03.16.(수) ~ 2022.03.19.(토) (10:00~17:00) (4일간)**
제출처	•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유의사항	**※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및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 일체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분양계약용 **(본인 발급용)**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단신부임 입증서류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경우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소득증빙서류 포함),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일반공급(가점제, 예비입주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배우자의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O		인감증명서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O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부양가족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2.03.22.(화)~2022.03.25.(금) (10:00~17:00), 4일간**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031-554-4412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O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O		정부수입인지		수입인지 세액 : 1억원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O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예: 예금잔액증명서, 차용증,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O		자금조달 관련 증빙자료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O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을 재공고 후 인터넷 청약방법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③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하며, 거래금액과 무관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와 그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시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떤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다주택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본 주택 건설지역인 경기도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2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후불제로 사업주체가 일정 비율에 한해 선납하며,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대신 납부했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신한은행	5621-5699-430614	수택1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3-713374 수택1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3호 계약자 → '1011503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납부를 인정하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분양대금 전액이 동 계좌로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으며 다소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Ⅶ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 금(80%)
주택형(㎡)	주택형 (약식표기)		계약시	2022.08.22.	입주지정일
059.7000A	59A	13,900,000	1,390,000	1,390,000	11,120,000
059.8100B	59B	16,700,000	1,670,000	1,670,000	13,360,000
059.8200C	59C	14,400,000	1,440,000	1,440,000	11,520,000
074.6800A	74A	16,900,000	1,690,000	1,690,000	13,520,000
074.6700B	74B	19,100,000	1,910,000	1,910,000	15,280,000
084.8400A	84A	19,300,000	1,930,000	1,930,000	15,440,000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구조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가전/가구/마감제/평면선택제 옵션 등) 중 일부 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추가설치품목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의 품절, 품귀 자재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신제품 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으로 추가 설치품목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타사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옵션사항이 반영된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 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않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약식표기)		설치 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2.08.22.	잔금(80%) 입주지정일	제조사
일반형 (공기청정기능 미적용)	59A, 59B, 59C,	부분	2개소	거실/주방+안방	3,630,000	363,000	363,000	2,904,000	LG전자
		전실	4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74A, 74B	부분	2개소	거실/주방+안방	3,630,000	363,000	363,000	2,904,000	
		전실(기본형)	4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전실(평면옵션 선택시)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멀티라운지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84A	부분(기본형)	3개소	거실+주방+안방	5,720,000	572,000	572,000	4,576,000	
		부분(평면옵션 선택시)	3개소	거실+주방+안방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전실(기본형)	5개소	거실+주방+안방+ 침실1+침실2	7,810,000	781,000	781,000	6,248,000	
		전실(평면옵션 선택시)	6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멀티라운지(알파룸)	9,020,000	902,000	902,000	7,216,000	
고급형 (공기청정기능 적용)	59A, 59B, 59C,	부분	2개소	거실/주방+안방	4,230,000	423,000	423,000	3,384,000	
		전실	4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140,000	714,000	714,000	5,712,000	
	74A, 74B	부분	2개소	거실/주방+안방	4,230,000	423,000	423,000	3,384,000	
		전실(기본형)	4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140,000	714,000	714,000	5,712,000	
		전실(평면옵션 선택시)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멀티라운지	9,200,000	920,000	920,000	7,360,000	
	84A	부분(기본형)	3개소	거실+주방+안방	6,620,000	662,000	662,000	5,296,000	
		부분(평면옵션 선택시)	3개소	거실+주방+안방	6,070,000	607,000	607,000	4,856,000	
		전실(기본형)	5개소	거실+주방+안방+ 침실1+침실2	9,310,000	931,000	931,000	7,448,000	
		전실(평면옵션 선택시)	6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멀티라운지(알파룸)	10,820,000	1,082,000	1,082,000	8,656,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은 계약 후 선택사항의 변경 불가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구조상의 문제로 시스템에어컨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은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 세대는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스탠드, 안방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기본 제공됩니다.(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으며, 천정형 에어컨을 위한 드레인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이컨을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 매립배관 시공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감안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시스템이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스프링클러, 환기구 등 천장부착물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구/마감제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2.08.22.	잔금(80%) 입주지정일
BI냉장고 패키지 + 키큰장	전 주택형	삼성전자 (비스포크(코타))	냉장 / 냉동 / 김치 (색상-코타화이트)	4,520,000	452,000	452,000	3,616,000
		LG전자 (오브제(S))	냉장 / 냉동 / 김치 (색상-미스트베이지)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기능성오븐	전 주택형	LG전자	MZ385EBT	400,000	40,000	40,000	320,000
식기세척기	전 주택형	SK매직	DWA-7505B	650,000	65,000	65,000	520,000
3구 인덕션	전 주택형	보쉬	PUJ631BB2E	2,890,000	289,000	289,000	2,312,000
		SK매직	IHR-B310E	460,000	46,000	46,000	368,000
의류관리기(복도)	74A, 74B, 84A	삼성전자	DF10A9500EG	1,510,000	151,000	151,000	1,208,000
		LG전자	S5BBU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의류관리기(드레스룸)	59B, 74A, 74B, 84A	삼성전자	DF10A9500EG	1,510,000	151,000	151,000	1,208,000
		LG전자	S5BBU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빌트인 클리너	전 주택형	그렉스	-	260,000	26,000	26,000	208,000
살균청정환기시스템	전 주택형	그렉스	-	1,860,000	186,000	186,000	1,488,000
천장형 에어샤워	전 주택형	그렉스	-	520,000	52,000	52,000	416,000
욕실 난방 환풍기	전 주택형	힘펠	-	780,000	78,000	78,000	624,000

※ 의류관리기(복도)는 평면선택제 선택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냉장고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벽지로 마감됩니다. 빌트인 냉장고 미선택, 발코니 확장시 기본형 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3) 기타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2.08.22.	잔금(80%) 입주지정일
평면 선택제	Room in Room (복도장1+복도장2+슬라이딩도어)	KCC	74A	2,470,000	247,000	247,000	1,976,000
			74B	1,640,000	164,000	164,000	1,312,000
		현대 L&C	74A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74B	3,280,000	328,000	328,000	2,624,000
	Room in Room (복도장+슬라이딩도어)	KCC	84A	1,980,000	198,000	198,000	1,584,000
		현대 L&C	84A	3,670,000	367,000	367,000	2,936,000
침실 붙박이장	기본형 선택시	-	59A/59B/59C	830,000	83,000	83,000	664,000
			74A	850,000	85,000	85,000	680,000
			74B	860,000	86,000	86,000	688,000
			84A	980,000	98,000	98,000	784,000
	Room in Room 선택시	-	59A/59C	830,000	83,000	83,000	664,000
			74A, 84A	1,490,000	149,000	149,000	1,192,000
			74B	1,520,000	152,000	152,000	1,216,000
거실아트월	포세린 타일 → 수입 포세린 타일	-	59A/59B/59C	740,000	74,000	74,000	592,000
			74A/74B/84A	850,000	85,000	85,000	680,000
	포세린 타일 → 세라믹 타일		59A/59B/59C	2,590,000	259,000	259,000	2,072,000
			74A/74B/84A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복도벽	벽지 → 포세린 타일	-	74A	330,000	33,000	33,000	264,000
			74B	300,000	30,000	30,000	240,000
	벽지 → 수입 포세린 타일		74A	910,000	91,000	91,000	728,000
			74B	810,000	81,000	81,000	648,000
	벽지 → 세라믹 타일		74A	2,870,000	287,000	287,000	2,296,000
			74B	2,550,000	255,000	255,000	2,040,000
주방 벽체	벽체(타일) → 엔지니어드 스톤	-	59A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59B	760,000	76,000	76,000	608,000
			59C	830,000	83,000	83,000	664,000
			74A/74B	700,000	70,000	70,000	560,000
			84A	990,000	99,000	99,000	792,000
	벽체(타일) → 세라믹 타일	-	59A	2,510,000	251,000	251,000	2,008,000
			59B	1,820,000	182,000	182,000	1,456,000
			59C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74A/74B	1,670,000	167,000	167,000	1,336,000
			84A	2,330,000	233,000	233,000	1,864,000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 세라믹 타일	-	59A	520,000	52,000	52,000	416,000
			59B	480,000	48,000	48,000	384,000
			59C	720,000	72,000	72,000	576,000
			74A/74B	560,000	56,000	56,000	448,000
			84A	580,000	58,000	58,000	464,000
욕실 벽/바닥	도기질/자기질 타일 → 유럽산 타일	-	전 주택형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바닥마감(거실, 복도, 주방)	강마루 → 포세린 타일	-	59A	430,000	43,000	43,000	344,000
			59B/59C	440,000	44,000	44,000	352,000
			74A	500,000	50,000	50,000	400,000
			74B	600,000	60,000	60,000	480,000
			84A	620,000	62,000	62,000	496,000
	강마루 → 유럽산 원목마루		59A	3,640,000	364,000	364,000	2,912,000
			59B/59C	3,760,000	376,000	376,000	3,008,000
			74A	4,230,000	423,000	423,000	3,384,000
			74B	5,050,000	505,000	505,000	4,040,000
			84A	5,290,000	529,000	529,000	4,232,000
바닥 마감(침실)	강마루 → 유럽산 원목마루	-	59A	3,410,000	341,000	341,000	2,728,000
			59B/59C	3,760,000	376,000	376,000	3,008,000
			74A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74B	4,940,000	494,000	494,000	3,952,000
			84A	5,050,000	505,000	505,000	4,040,000
멀티라운지		KCC	74A	510,000	51,000	51,000	408,000
			74B	500,000	50,000	50,000	400,000
			84A	1,160,000	116,000	116,000	928,000
		현대 L&C	74A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74B	1,940,000	194,000	194,000	1,552,000
			84A	2,670,000	267,000	267,000	2,136,000
H키친 라운지		KCC	59A	870,000	87,000	87,000	696,000

			59B/59C	550,000	55,000	55,000	440,000
			74A/74B	700,000	70,000	70,000	560,000
			84A	2,030,000	203,000	203,000	1,624,000
		현대 L&C	59A	870,000	87,000	87,000	696,000
			59B/59C	550,000	55,000	55,000	440,000
			74A/74B	700,000	70,000	70,000	560,000
			84A	2,930,000	293,000	293,000	2,344,000
현관중문		KCC	59A/59C/84A	700,000	70,000	70,000	560,000
			59B	710,000	71,000	71,000	568,000
			74A/74B	720,000	72,000	72,000	576,000
		현대 L&C	59A/84A	2,120,000	212,000	212,000	1,696,000
			59B/59C/74A/74B	2,230,000	223,000	223,000	1,784,000
안방 붙박이장		-	59A/59B/59C	1,660,000	166,000	166,000	1,328,000
			74A	2,110,000	211,000	211,000	1,688,000
			84A	2,160,000	216,000	216,000	1,728,000
드레스룸 벽판넬타입 선반+슬라이딩 도어		KCC	59B	1,780,000	178,000	178,000	1,424,000
			74A	2,010,000	201,000	201,000	1,608,000
			74B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84A	4,620,000	462,000	462,000	3,696,000
		현대 L&C	59B	2,670,000	267,000	267,000	2,136,000
			74A	2,910,000	291,000	291,000	2,328,000
			74B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84A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욕실 라운드 상하부장 / 착색 샤워부스		-	전 주택형	390,000	39,000	39,000	312,000
보조주방 상하부장		-	74A/74B/84A	560,000	56,000	56,000	448,000
주방 전동플랩장 + 매입조명		-	59A	3,460,000	346,000	346,000	2,768,000
			59B	1,270,000	127,000	127,000	1,016,000
			59C	2,390,000	239,000	239,000	1,912,000
			74A	3,380,000	338,000	338,000	2,704,000
			74B	3,370,000	337,000	337,000	2,696,000
			84A	3,420,000	342,000	342,000	2,736,000
특화조명		-	59A	4,750,000	475,000	475,000	3,800,000
			59B	4,660,000	466,000	466,000	3,728,000
			59C	4,740,000	474,000	474,000	3,792,000
			74A	5,180,000	518,000	518,000	4,144,000
			74B	5,270,000	527,000	527,000	4,216,000
			84A	5,040,000	504,000	504,000	4,032,000
보이스홈		-	전 주택형	1,090,000	109,000	109,000	872,000
H-BELL		-	전 주택형	137,000	13,700	13,700	109,600
방충망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전실)	-	59A	1,290,000	129,000	129,000	1,032,000
			59B	1,430,000	143,000	143,000	1,144,000
			59C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74A	1,980,000	198,000	198,000	1,584,000
			74B	2,130,000	213,000	213,000	1,704,000
			84A	1,860,000	186,000	186,000	1,488,000

- 보이스홈 옵션은 평형에 구분 없이 한 가지 안(거실/주방/안방)만 선택 가능합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시 안방 스위치 위에 음성인식 스피커가 별도 설치됩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시 거실 10인치 월패드가 13인치 음성인식 월패드로 변경 설치되며, 거실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가 월패드 밑에 별도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시 주방에 음성인식 스마트 거치대가 설치되며, 후면 높이에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설치되며 후면에 주방거치대 전원선 및 통신 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H-BELL 옵션은 거실에 1개소 설치 됩니다.
- 특화조명 옵션은 거실 우물천장 조명/거실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등 / 안방조명 포함사항이며, 평면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또는 옵션안내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거실 우물천장 조명 및 거실 픽쳐레일 일체형 간접등 분절라인 추가, 거실 우물천장 조명 몰딩 일체화, 거실 픽쳐레일 일체형 간접등 도배, 몰딩 밀 설치 마감 변경 등)

5)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구조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가전/가구/마감제/평면선택제 옵션) 등 중 일부 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4)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신한은행	5621-4996-171107	현대건설(주)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3-579014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3호 계약자 → '1011503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위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납부를 인정하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분양대금 전액이 동 계좌로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으며 다소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Ⅷ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사업시행인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 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법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는 사이버 견본주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은 사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대지지분을 배분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과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며, 대지지분을 공유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배면인접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 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 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허가 시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제 적용은 동등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분양 이후 단지 명칭(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은 인허가청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부터의 진동, 소음, 빛, 냄새, 시야간섭 등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 홍보물(모형, CG, 인쇄물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오픈 시기 및 입점업체는 미정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픈 시기 및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주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리·운영하여야하고, 주택 외 시설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문주, 쓰레기집적소, DA등 외부 구조물에 의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구조물 빛 반사에 의한 빛공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105동 일부 세대는 문주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

- 견본주택(분양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외벽 색채 및 디자인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건립타입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은 관람객을 위한 냉난방 장비이며, 본 공사시에는 옵션선택시 냉방전용 장비가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은 59A, 74A, 84A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은 인쇄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조명기구는 세대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인쇄물,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미건립 세대 평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상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지이미지상의 조경계획, 조경시설, 식재배치, 시설물계획, 포장문양 등 제반 사항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로서 실제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지이미지상의 인근 도시정비시설은 설계단계의 연출이미지로,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유관부서 협의와 설계단계를 진행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쇼파, 아트웍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모형, 공급간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차후 미확인으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스마트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실제 색상, 패턴이 상이할 수 있고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 인쇄물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CG,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CG 및 이미지컷,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계약 관련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건축허가사항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 및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제가 불가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① 설계일반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동표시 사인물, BI 등 각종 사인물의 배면에는 설치를 위한 하지틀(구조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제2종 일반지역에 건립되는 건축물로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의 측벽 커튼월룩 디자인은 설계 또는 시공등의 사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로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가구와 주방가구, 욕실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창호, 현관문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행사" 또는 "시행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도심경관의 역사·문화성 강조를 위하여 '경기도 구리시 기본경관계획'의 도심 역사문화적 경관거점 경관계획 기준으로 당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사"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시행사" 또는 "시행사"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시행사" 또는 "시행사"이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밥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내 조경설계는 인허가 및 실시설계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주변 현황/단지배치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인쇄물,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주차장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방차, 통학차량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거실 및 일부세대 침실, 주방 등의 전망강화형 창호에 설치된 유리난간은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유리난간이 없는 다른 창호를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아파트 주동/공용부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외부장식물에 의한 빛공해, 조망 및 일조 침해 (104동, 105동 일부 세대는 문주로 인해 조망 및 일조 침해)
 - 문주, 쓰레기집적소, DA등 외부 구조물에 의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구조물 빛 반사에 의한 빛공해
 - 단지 내 각종 시설물 및 장식물(옥상구조물, D/A, 탑라이트,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등)은 설계/안전/시공의 사유로 위치/개소/규모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우수조/정화조/정화조 배기탑/근린생활시설 및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주동 1층 필로티에는 인허가과정에서 다양한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실 시공시 시설물의 종류, 규격, 마감재, 디자인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로티에 인접한 저층세대로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단지 커뮤니티(피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제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단, 주차공간은 2.3m 이상)	2.7m
지하 2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 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개폐창 위치,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셔틀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들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6~9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합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④ 단위세대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차후 여하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민원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아트월 간접조명 설치시, 안방앞 발코니로 스프링클러 배관연결을 위해 안방분합문의 높이가 100mm 정도 낮아지며, 안방커튼박스의 높이가 축소되어 커튼레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옵션포함)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06동 74A 타입은 건축법상 채광용 이격거리로 인해 알파공간에 측면창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타입은 보조주방 창호를 통해 보일러의 측면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함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수분양자(입주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시행사"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기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 / 다용도실 등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비설치외 1개의 필터가 입주시 추가제공되며, 이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 부담분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침실 내에 세대통합단자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스마트거치대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되며, 후면에 주방거치대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조명 유상옵션 선택시 안방앞 발코니로 스프링클러 배관연결을 위해 안방분합문의 높이가 100mm 정도 낮아지며, 안방커튼박스의 깊이가 100mm 정도 축소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으로 민원 / 하자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옵션(매입조명, 플랩장) 선택시 안정기 등의 설치로 가구 내부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차단기 설치에 따라 주방 상부장 매입조명(옵션)의 적용 부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수전, 도기, 욕실 온풍겸용 환풍기 등의 일부 설비 자재는 발주처 지정품목으로 추후 협의 사항에 따라 모델명 및 설치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홈투카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니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 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타입은 피난방향을 고려하여, 단위세대 평면도상 현관문의 열림방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구리초등학교 배치예정이며, 중학생은 구리중학군 내 학교에 배정 예정이나 추후 본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학생수용 가능여부에 따라 차후 다른 학교로 이동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 031-550-6222~6225, 홈페이지 주소: www.goegn.kr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용역원실, 옥외주민운동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12022-101-0000900호	**₩135,779,2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분	내 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친환경주택성능수준) : 해당사항 無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 분	내진능력(MMI 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 - 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마당종합건축사사무소	㈜하일기술단	㈜건창기술단
감리금액	1,663,380,000	379,819,090	505,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사	시공사
상 호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35, 3층(수택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법인등록번호	284271-0002746	110111-000790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힐스테이트 구리역 견본주택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 사업지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www.hillstate.co.kr/s/#guri
■ 분양문의 : 031-554-4412
※ 방문예약 접수 시기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시행사 :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현대건설 주식회사